

합병·분할·영업양수도의 상법 절차와 적격 요건, 결손금 승계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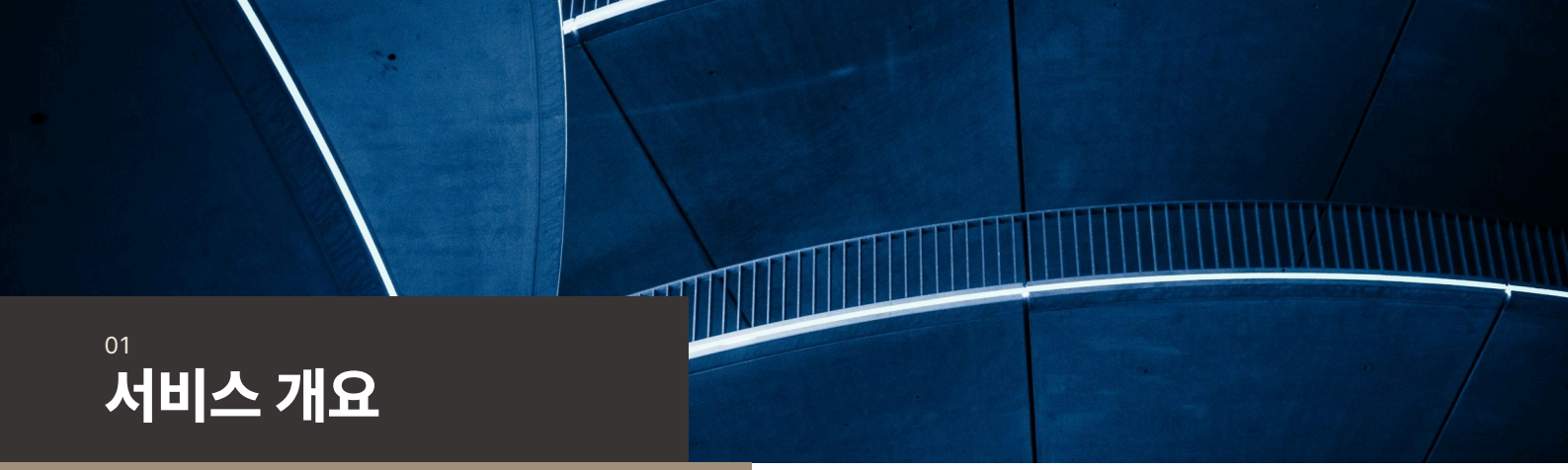
회계법인 리파인드

M&A·합병·분할 제안서

작성일 2026. 11. 2.

REFINED
회계법인 리파인드

T. 02-516-3830 | E. admin@refinedacc.com | W. refinedacc.com



01

서비스 개요

적격 요건 4개를 갖추면 합병 양도차익 과세가 이연됩니다

검토 결론

합병이 적격이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요건을 못 갖추면(부득이한 사유 제외) 합병 사업연도에 양도차익 과세가 생깁니다(법인세법 §44①②).

적격 판정 뒤에도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고용은 3년) 사후관리가 있고 위반하면 이연액이 익금이 됩니다.

적격합병 성립 조건 4개

1
사업 1년 이상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간

2
주식 대가 80%
대가 80% 이상이 합병법인·모회사 주식, 지배주주 등 보유

3
사업 계속
승계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

4
고용 80% 승계
1개월 전 근로자의 80% 이상 승계·유지

이런 분께

- 합병이나 분할로 그룹 구조를 정리하려는 오너기업 대표
- 결손금이 있는 법인과 합병을 검토 중인 분
- 사업부문을 떼어 분할하려는 분
- 합병 뒤 직원 수 변동으로 추징될지 걱정하는 분

서비스 범위와 진행 단계

1 현황 진단	두 법인의 사업 연수, 주주 구성, 근로자 수, 결손금, 부동산을 정리해 적격 요건 4개에 하나씩 대입합니다. 요건 하나가 빠지는지를 이 단계에서 가립니다.
2 구조 설계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안을 세후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안마다 법인세, 결손금 활용 가능성, 사후관리 부담, 소요 일정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3 절차 실행	합병계약서,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 매수청구, 채권자 공고와 최고, 등기까지 일정표를 만들고 법정 기한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4 사후관리	등기 이후 사업연도 종료일과 2년, 3년 기한을 일정표에 적고 근로자 수와 자산 처분을 점검합니다.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제출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시행령 §80의4⑪).



02

합병의 구조와 세금

적격이면 장부가액 승계, 아니면 시가 양도로 과세됩니다

합병은 피합병법인이 해산하면서 자산을 합병법인에 넘기는 거래이고 세법은 이를 양도로 봅니다(법인세법 §44①). 적격 요건을 갖추면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어 과세가 이연되고 갖추지 못하면 피합병법인에 양도차익 과세가 생깁니다. 상법 절차와 세법 기준일은 별도로 진행되므로 한 일정표에 함께 적으면 등기일과 사업연도 종료일이 어긋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해 1. 합병 거래의 진행 순서

계약·이사회
합병계약 조건 확정, 소집통지에 요령 기재

→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2/3, 발행 1/3)

→

주주·채권자
매수청구 20일, 공고·최고 2주

→

합병등기
적격 요건 판정 기준일

→

사후관리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3년

적격이면 장부가액 승계, 아니면 시가 양도로 과세

적격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 간일 것, 합병대가의 80% 이상이 합병법인(또는 모회사) 주식일 것, 승계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합병등기일 1개월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해 유지할 것입니다(§44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은 4요건과 관계없이 적격으로 보고 사후관리도 없습니다(§44③, §44의3③).

근거: 법인세법 §44①②③, §44의3③, 법인세법 시행령 §80의4③, 서면-2024-법인-4038(2025.3.18)

도해 2. 적격합병과 비적격합병의 결과 비교

법인세 단계의 결과를 항목별로 나눠 비교합니다

항목	적격합병	비적격합병
피합병법인 양도손익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44②)	양도가액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차익을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에 넣습니다(§44①)
합병법인의 자산 취득가액	장부가액으로 승계합니다. 시가와의 차액은 자산조정계정에 계상합니다(§44의3①, 시행령 §80의4①)	합병등기일 현재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봅니다(§44의2①)
피합병법인 결손금	승계합니다. 승계 사업 소득 범위에서 소득의 80%(중소기업 100%) 한도로 공제합니다(§44의3②, §45②⑤)	승계 규정이 적격합병에만 있어 승계되지 않습니다(§44의3②)
사후관리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고용은 3년입니다(시행령 §80의4③)	없습니다. 합병 사업연도에 과세가 확정됩니다

피합병법인 주주는 받은 합병대가가 소멸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이 배당으로 의제됩니다(법인세법 §16①5호, 소득세법 §17②4호). 금액은 사안별로 계산합니다.



03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6개

적격 요건 위반은 양도차익 과세, 사후관리 위반은 이연액 익금입니다

1 근로자 80% 계산

적격 요건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 중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44②4호). 임원, 정년 도래 퇴직 예정자, 일용근로자, 사망·질병 퇴직자, 계약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갱신으로 총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분모에 포함) 등은 분모에서 제외합니다. 분모가 50명이면 40명 이상을 승계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로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44②4호, 시행령 §80의2①3호 라목·⑥

2 주식 대가와 보유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또는 모회사) 주식이 80% 이상이어야 하므로 금전은 20%까지입니다. 주식은 각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른 가액 이상으로 배정해야 합니다(시행령 §80의2④). 합병등기일 전 2년 안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아니면 발행주식 20% 초과분, 지배주주등이면 취득분 전부에 교부한 주식이 금전 교부로 간주됩니다(§80의2③). 지배주주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하고 교부주식의 2분의 1 미만 처분은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44②2호, 시행령 §80의2①1호 가목·③④⑤

3 사후관리 위반 계산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안에 승계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배주주 등이 교부주식을 처분하면 위반입니다. 3년 안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자 수가 두 법인 합계의 80% 미만이어도 같습니다.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으면 폐지로 봅니다. 위반하면 자산조정계정 잔액 총합계액(0보다 클 때만)과 공제한 승계 결손금 전액이 익금이 되고 공제받은 감면·세액공제액은 그 사업연도 법인세에 더해 납부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44의3③, 시행령 §80의4③④⑥⑧

4 결손금 승계 한도

승계 결손금은 승계 사업에서 난 소득 범위에서만 공제하고 합병법인 자신의 결손금은 승계 사업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한도는 소득의 80%(중소기업 100%)입니다. 승계 결손금은 합병등기일을 개시일로 보아 15년 이내 발생분만 쓰고 합병법인 자신의 결손금은 개시일 전 15년 이내 발생분을 씁니다. 승계 사업과 기존 사업은 회계를 나눠 기록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간 또는 동일사업 법인 간 합병은 구분경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13①, §45①②⑤, §113③, 시행령 §81①②

5 합병비율과 증여세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비율이 한쪽에 유리하면 대주주등에게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상증법 §38①). 대주주등은 지분 1% 이상이거나 액면가액 3억원 이상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이익이 합병 후 법인 주식등 평가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제외됩니다(상증령 §28②④). 법인세 적격 여부와 별개이므로 계약 전에 양쪽 주식 평가액부터 맞춥니다.

근거: 상증법 §38①, 상증령 §28①②③④

6 분할 요건과 절차

적격분할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이 독립 사업부문을 포괄승계 방식으로, 분할법인만 출자해 분할하는 경우입니다.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하고(분할합병은 80% 이상, 상대방 법인은 1년 이상 사업), 주식 보유, 사업 계속, 근로자 80% 승계·유지가 붙습니다(법인세법 §46②1~4호). 부동산임대업 주업 부문은 제외하고(§46③), 사후관리는 2년, 고용 3년입니다(시행령 §82의4③). 분할계획서는 특별결의로 승인하며(상법 §530의3①②) 반대주주 매수청구는 분할합병에만 있고 단순분할에는 없습니다(§530의11②). 분할 전 채무는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해 변제합니다(§530의9①). 단순분할은 계획서에 정하면 신설회사가 승계 채무만 부담하고(②), 분할합병도 계약서에 정하면 승계회사 등이 승계 채무만 부담합니다(③). 단순분할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따릅니다(④).

근거: 법인세법 §46②③, 시행령 §82의4③, 상법 §530의3·§530의9①②③④·§530의11



04

판정 순서와 일정

상법 절차와 세법 기한을 한 일정표로 맞춥니다

도해 3. 합병 절차 일정

계약 조건 확정
합병비율과 대가 구성 등 세무 조건을 확정하고 이사회 결의 일정을 잡습니다. 계약 문안은 법무 전문가가 정하며 소집통지에 요령을 적습니다(상법 §522②).

주총 전
주총 2주 전부터 합병계약서 등을 본점에 비치합니다(§522의2①). 반대주주는 총회 전 서면으로 반대를 통지해야 합니다(§522의3①).

결의일부터 2주
1개월 이상의 이의 기간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합니다(§527의5①). 이의 채권자에게는 변제나 담보를 제공합니다(§232).

결의일부터 20일
반대 주주의 매수청구 기한입니다(§522의3①). 매수청구 금액이 크면 회사가 대금을 부담하므로 계약 전에 반대 가능성이 있는 주주의 지분을 집계합니다.

등기일 이후
합병무효의 소는 등기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합니다(§529②). 세법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고용 3년)을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도해 4. 판정 순서

단계	판정 내용
1. 100% 지분관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거나 같은 법인이 두 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면 적격으로 봅니다. 사후관리도 없습니다(법인세법 §44③, §44의3③).
2. 4요건 대입	사업 1년, 주식 대가 80%, 사업 계속, 근로자 80% 승계를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합니다(§44②).
3. 부득이한 사유	주식 처분, 사업 폐지, 고용 하락이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격이 유지됩니다(시행령 §80의2①, §80의4⑦).
4. 결손금 공제	승계 결손금은 승계 사업 소득 범위, 80%(중소기업 100%) 한도로 공제합니다. 구분경리 대상인지 확인합니다(§45, §113③).
5. 위반 시 익금	자산조정계정 잔액과 공제한 결손금 전액이 익금이 됩니다(시행령 §80의4④). 합병매수차익은 손금에 넣고 5년간 월수 비율로 나눠 익금에, 합병매수차손은 익금에 넣고 §80의3② 요건에서만 나눠 손금에 넣습니다(§80의4⑤).
6. 취득세 감면 확인	합병으로 양수하는 사업용 재산은 중소기업 간 또는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적격합병일 때 취득세 60% 경감(지특법 §57의2①), 적격분할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50% 경감(③2호)이며 둘 다 2027.12.31까지 취득분입니다. 분할은 등기일부터 3년 이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추징합니다.

보수

보수는 상담 후 견적으로 안내합니다.

두 법인의 재무제표, 주주명부, 근로자 명부를 받아 작업 범위를 확정한 뒤 범위별로 제시합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문의는 대표번호로 받습니다

Q1. 반대하는 주주가 있으면 합병을 못 하나요?

특별결의 정족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를 채우면 반대 주주가 있어도 합병할 수 있습니다(상법 §522①③, §434). 반대 주주는 총회 전 서면 통지 후 결의일부터 20일 안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522의3①). 소멸회사 총주주 동의 또는 존속회사의 90% 이상 소유 시 소멸회사 주총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527의2①). 소규모합병은 신주·이전 자기주식이 존속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이고 주주에게 주는 금전 등이 순자산의 5% 이하일 때 존속회사 주총만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0% 이상 주주가 2주 안에 서면 반대하면 쓸 수 없고 이 경우 존속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없습니다(§527의3①④⑤).

상법 §522, §522의3, §527의2, §527의3, §434

Q2. 결손금이 큰 회사를 합병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나요?

적격합병일 때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손금 승계 규정이 적격합병에 있으므로 비적격합병이면 승계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44의3②). 적격이어도 승계 사업에서 난 소득 범위에서, 소득의 80%(중소기업 100%) 한도로만 공제됩니다(§45②⑤). 사후관리 기간 중 위반하면 공제한 결손금 전액이 익금에 들어옵니다(시행령 §80의4④). 절세액은 승계 사업의 장래 소득 추정치와 사후관리 이행 가능성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44의3②, §45②⑤, 시행령 §80의4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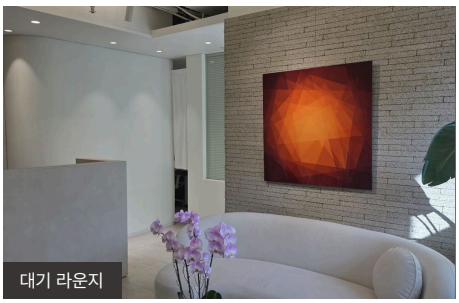
Q3. 영업양수도로 하면 합병보다 단순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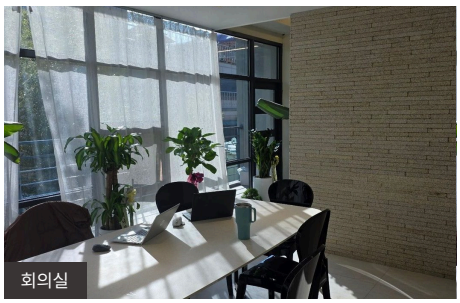
절차가 줄어드는지는 사안별로 다릅니다.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 매수청구 절차를 거칩니다(상법 §374①1호, §374의2).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을 양수하는 회사도 같습니다(§374①3호). 법인세는 합병의 적격 이연 규정(법인세법 §44②)이 영업양수도에는 적용되지 않아 양도법인의 양도차익이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들어갑니다(§15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다만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는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10⑨2호, 시행령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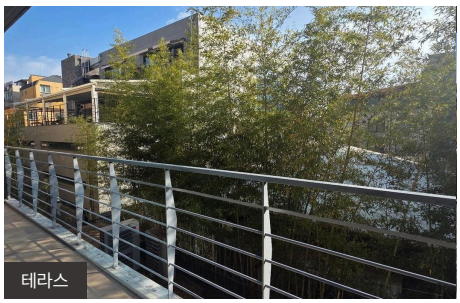
상법 §374, §374의2, 법인세법 §15①, §44②, 부가가치세법 §10⑨2호

담당 회계사

이름	직위	전문 분야
이종헌	대표 회계사	가업승계·상속증여, 법인 구조 설계, 세무조사 대응, 기업가치평가
임연희	부대표 회계사	법인 조세 업무, 중소·중견기업 세무 자문
이현우	파트너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조사 대응, 경정청구, 세무진단
장하리	이사 회계사	세무조정, 세무자문, 개인 재산제세 업무
김윤경	이사 회계사	K-IFRS·US-GAAP 감사, 투자회계, 파생상품 위험회피회계 검토
박광종	세무사 고문(세무법인 엑스퍼트 소속)	국세청 약 40년 근무, 조사·징세·부가가치세 업무


대기 라운지


회의실


테라스

T. 02-516-3830 | F. 0507-1790-1496 | E. admin@refinedacc.com | W. www.Refinedacc.com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140길 18(크레아빌딩) · 지하철 신사역·논현역에서 각각 도보 5분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문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